

제317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

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3. 23.
전문위원 신정경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개요

- 가. 의안번호: 제568호
- 나. 제출자: 이용진 의원 등 11인
- 다. 제출일자: 2026. 2. 25.
- 라. 회부일자: 2026. 3. 10.

2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 사항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.
- 나. 조례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법령과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고, 띄어쓰기 등 자구 정비

3. 주요내용

- 가.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(안 제17조제1항, 별표5)
 -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
 - 다둥이(둘 이상 자녀) 출산 시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휴가를 부여함
- 나. 행정 용어 정비: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“해직”이라는 표현을 「지방공무원 법」에 맞는 “면직”으로 수정(안 제11조)
- 다. 자구정비: 입안 원칙에 따라 띄어쓰기 및 어색한 문장 구조를 일괄 정비함(안 제1조, 제4조제1항, 제9조제1항, 제13조, 제17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사전협의: 의회사무국
- 라. 입법예고: 2026. 3. 3.~2026. 3. 10.(의견없음)

II. 검토의견

□ 상위법령 개정 취지 반영 및 행정용어 정비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, 법령 위반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최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임
- 기존의 ‘해직’이라는 용어를 법령 용어인 ‘면직’으로 수정하고, 문맥에 맞지 않는 조사를 정비하는 등 구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은 타당함

□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공무원의 복지 증진 및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

붙임1

<개정> [별표 5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7조제1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산	배우자	20 (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)
입양	본인	20
사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